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 | <h2 style="margin: 0;">제규정관리규정</h2> | 규정번호 | 3-1-20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정일자 | 1997.03.01.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일자 | 2020.06.01.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차수 | 3차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관부서 | 전략기획처       |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시행되는 제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,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제규정”이라 함은 대학의 제반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대학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운용, 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한다.

### 제2장 제규정의 형식

제4조(제규정의 편성) 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편성하되, 규정문 중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. 다만, 규정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1. 총칙 :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 등 총괄적인 사항
2. 본칙 : 기본사항 또는 지침, 절차
3. 부칙 : 시행일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, 기존규정과의 관계 등

제5조(형식) ① 조문은 법령식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.

- ② 장, 절, 조, 항 및 호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표기는 항은 ①②로, 호는 1,2로 표시하고, 호 이하는 가, 나로 표시한다.
- ③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, 기타 외국문자를 혼용할 수 있다.
- ④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조문에는 그 내용을 표기하는 명칭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서식 등 [별표]는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3장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
제6조(입안 절차) ① 규정의 입안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소관부서에서 [별지제1호서식]에 의거하여 초안을 발의한다.

- ② 제1항의 초안이 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입안된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, 일정기간 공지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.
- ④ 교무위원회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심의한다.
- ⑤ 제규정의 입안, 제정, 개정 및 폐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업무소관 부서에 입안, 발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, 보직명 변경의 경우,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입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행일은 직제개편 시행일로 한다.

제7조(제정권자)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총장이 정한다. 다만,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, 개정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효력) ① 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, 그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.

② 법령, 정관 또는 학칙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③ 상위규정의 효력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.

#### 제4장 운영 및 관리

제9조(주관부서) 제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관부서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관리) ① 제규정관리 주관부서는 제정, 개정 및 폐지된 제규정을 제규정대장[별지제2호 서식]에 등재하고 그 원본은 보존한다.

② 제규정관리 주관부서는 제정, 개정 및 폐지된 제규정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.

제11조(유권해석) 제규정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제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규정관리 주관부서는 이 규정이 정하는 체제와 형식에 벗어난 규정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